

# kiri Weekly

2016.4.18. 제380호

## 주간 포커스

ISA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

## 이슈 분석

알리안츠 한국법인 매각가격 논란

한국의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건강위험요인과 시사점

## 글로벌 이슈

인도 상업용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 공동인수제 폐지

글로벌 관점에서 본 보험 M&A 현황 및 전망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주간 포커스와 이슈 분석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 ISA와 금융소득 과세 방향

정원석 연구위원

## 요약

- 현재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는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의 단순한 이자·배당 위주 금융소득 과세제도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금융상품과 괴리 때문임.
  -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저해시켜 금융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올해 도입된 ISA에 대한 과세제도는 손실 시 기간통산, 투자상품 간 통산 그리고 비과세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등을 통해 현재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함.
  - 수익과 손실의 통산 및 과세대상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는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일본,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납세자가 느끼기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금융소득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금융소득과세일체화” 개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통산하고 과세방식을 단순화하였음.
  - 미국 역시 금융투자에 대한 상품 간, 기간 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소득 과세의 합리화가 꼭 필요함.

## 1. 검토 배경

소득세 과세에 있어 기준이 되는 큰 원칙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같은 규모의 소득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한다’는 원칙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연 1회 결산·분배 규정에 따라 해당 펀드를 환매하지 않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하게 된다. 그런데, 이듬해 펀드 환매 시점에 해외주식이 폭락하여 원금 이하의 자금을 수령한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소득세 과세의 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이며, 이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는 일반인의 금융투자 참여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sup>1)</sup> 그리고 이러한 과세방식의 문제는 과거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이자·배당 위주의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재 금융상품 과세에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느끼는 ‘상식적인’ 과세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2)</sup>

그런데, 올해 정부가 ‘서민의 금융투자 활성화

를 통한 자산증식’을 위해 도입한 ISA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과세는 현재까지 투자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온 금융 과세상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ISA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과세방식이 우리 금융소득 과세 방식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우리나라 금융소득 과세방식과 문제점

우리나라 국세청은 금융소득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sup>3)</sup> 여기서 이자소득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타인에게 일정기간 금전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sup>4)</sup>, 배당소득은 투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하여 지분투자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금을 수령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sup>5)</sup>

우리가 흔히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주식거래차익 등 자본이득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국내주식투자 혹은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파생상품 투자이익은 소득세법상 정의(혹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해왔으나 개인투자자에 한해 2016년부터는 KOSPI 200 선물·옵션상품에 대한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세율 5%의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sup>6)</sup>

1) 오윤·문성훈(2015),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21-1, p. 77~116.

2) 정운오·전병욱(2010),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6-2, p. 261~307.

3) 국세청(2015),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4) 소득세법 제16조.

5) 소득세법 제17조.

6) 소득세법 104조 제1항.

두 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sup>7)</sup>의 경우 국내주식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을 제외한 모든 투자이익(이자, 배당, 파생상품 및 채권 매매차익, 해외주식 매매차익 등)을 합산하여 연 1회 이상 결산한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sup>8)</sup>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그리고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올해부터 도입된 해외펀드 비과세제도로 인해 한 사람당 투자금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이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sup>9)</sup>

현재 금융소득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납세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집합투자기구는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여 설령 투자자가 이를 환매하지 않더라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독립된 실체로 보는 관점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장기투자 시 첫해에는 매매차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 해에는 매매차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각 연도별 이익과 손실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펀드에서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sup>10)</sup>을 개정하여 이자·배당소득은 매해 결산·분배하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유보하였다가 환매 시 일괄과세가 가능하도록 과세방식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하에서도 환매 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매해 결산을 통해 납세한 이자·배당소득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합리한 과세의 또 다른 예로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A, B에 투자하여 집합투자기구 A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또 다른 집합투자기구 B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모두 고려하면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세 시에는 손실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 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불인정은 비단 집합투자기구 간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와 예·적금 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방식은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분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과세 논리상으로는 개인 혹은 법인 과세 시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을 가리지 않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

7)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8항.

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 17.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할 때 금융소득이라는 동일한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는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상이한 과세방식과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에서 비롯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복잡한 과세방식 등으로 인해 납세당사자인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소득 과세의 복잡성은 일반 국민의 금융투자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3. ISA 투자 시 금융소득 과세

정부는 올해부터 서민의 자산증식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였다. 이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다. ISA의 기능상 특징은 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눈에 띄는 금융소득 과세상의 특징은 5년 이후 만기수령 시 최대 25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된다는 점이다. 또한 동일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기간 간 그리고 서로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통산은 물론 예·적금으로부터의 이자소득 역시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을 허용하여 금융소득에 관한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ISA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은 앞서 언급한 현재 금융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해외의 금융소득 과세방식

우리나라처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투자상품별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일본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금융소득과세일체화’ 개혁을 점진적으로 이루었다. 2004년부터 추진된 금융소득과세일체화 개혁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의 단순화, 균등화, 금융소득 간 손익통산범위 확대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골자로 추진되었다.

과세방식의 단순화 및 균등화는 이자·배당 및 주식 양도차익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 세율을 20%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손익은 물론 주식과 채권 간, 주식과 배당 및 채권 이자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고 있다. 또한, 투자로 인해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최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금융소득과세일체화는 지난 10년간 점진적이지만 치밀하게 추진되어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20% 단일세율과세 등 목표했던 개혁의 대부분을 이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합리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같은 해에 금융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하며, 당해 순손실이 발생한 다음 해까지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최장 8년까지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투자 시 금융상품 간 그리고 투자기간 간 손실과 이익의 통산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세제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손실 시 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ISA에 대한 과세 형태는 앞서 언급한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ISA는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상당부분 해결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나 금융소득 과세 개선은 세수 감소, 투자자 간 납세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 역시 존재하는데, ISA도입은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범사례가 될 것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금융소득 과세가 담아야 할 많은 부분을 반영한 ISA 과세제도를 디딤돌로 삼아 우리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합리적인 금융소득 과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kiri**

## 5.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의 형태와 특징을 불문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으로써 인해 과세 시 납세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이전인 이자·배당 위주의 금융상품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에 구축해 놓은 과거의 금융과세체계가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해진 금융상품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